

## 2023학년도 수시모집 「실기고사」 ‘코로나19 격리대상자’ 응시 안내

본 안내사항은 2023학년도 강남대학교 수시모집 실기고사의 응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이 허용된 격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안내사항입니다.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대입전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격리대상자(확진자/격리자)	병원 등 치료시설에 입원격리 중인 자	제주도 거주 격리대상자
응시가능	응시불가	응시불가

※ 격리대상자: 코로나19 확진자, 격리자(격리대상 접촉자, 공동격리자)

※ 제주도 거주 격리대상자: 전형 특성 상 제주도 별도고사장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응시 지원 불가

1. 격리기간 중 실기고사 응시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(모니터링 담당자)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동 방법을 협의\*해야 합니다.

\* 협의절차는 보건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

-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.
- 모니터링 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, **도보·자차·방역택시** 등을 이용합니다.
- 시험장 출발/도착/시험종료/격리지 복귀 시(총 4회)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.

2. 자택격리기간(의무 7일) 중 전형실시일이 포함되어 있는 **확진자 및 격리자**는 반드시 대학에 **사전 신고**하여야 하며, 별도 고사장과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.

- 외출 시 격리자임을 알 수 있는 증표(격리통보서 등)와 수험표 필히 지참

3.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(운전자) 1인만 동행합니다.

- 자차 이동 시 준수사항

- 자가격리 장소(집 등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일회용 장갑 착용
- 이동 시 반드시 개인(가족 등 보호자)차량으로 이동하며,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
- 격리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
-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 도착

- 보호자(운전자) 준수사항

- 차량 탑승 전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하고, 이동 시 항상 마스크 착용
- 이동 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, 가능한 한 대화 금지
-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충분히 환기하며, 이동 중에도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자주 환기
-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하고, 식사가 필요한 경우 격리대상자와 분리하여 식사
- 격리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은 손길이 닿는 표면(손잡이 등)을 소독
  - 고사장에서 하차 후 1회, 격리장소에 하차 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

4. 고사장 도착 시 고사관리자의 안내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5.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과 숙박은 금지됩니다.
  -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 전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 - 화장실은 별도고사장 내 따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실기고사 응시를 마친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.
6. 외출 중에는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
  -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  - 단, 실기고사 응시 중 신분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7. 실기고사 응시를 위해 이동 또는 평가 중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회수하여야 하며, 쓰레기 회수를 위해 폐기물봉투를 개인 지참합니다.
8. 평가 종료 후에는 반드시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 이동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한 것으로 간주되며, 「감염병예방법」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9. 실기고사 응시 전·후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(국번없이 ☎1339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